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사 명: 호저면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건축)
나. 공사현장: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522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건축공사 1식(2개 동, 지상1~2층, 연면적 1,596.82㎡)
라. 공사유형: 신설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60일
바. 추정금액: 5,723,005,000원

추정가격: 4,649,310,000원 부가세: 464,931,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608,764,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140,121,00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5,114,241,000원입니다.

- 사. 현장설명: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함
 아.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7. 31. 15:00 ~ 2026. 8. 18. 15: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8. 16: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법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공사로 발주합니다.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 가.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다.

5. 입찰서 제출

-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낙찰자 결정

- 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pm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평가기준표 (별표 3호)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 ※ 시공경험 평가 시 업종별 비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비율**
 -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252,712,147원**
- 라. 경영상태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 마. 낙찰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바.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시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자 중 탈락이 확실한 업체는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의 공사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합계액 : 4,289,847,126원(부가가치세 포함)**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준수사항

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A값
55,339,832원	7,271,653원	73,119,389원	81,576,095원	35,405,178원	0원	0원	252,712,147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납입확인서(입금내역)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의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최종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조례」,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

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사용 관련사항

-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고정계좌 등)를 착공 시 발주부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및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유의사항

- 가. 설계도서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 [원주시청 재산관리과 김영기\(033-737-2243\)](tel:033-737-2243)
- 나. 공고 관련 문의: 원주시청 회계과 이상혁(033-737-2433)
- 다. 기타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라.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 사. 계약상대자는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공사감독관에게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임대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아. 계약상대자는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시 가급적 원주시 관내 건설업체 중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관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2026. 7. 31.

원주시 재무관